

전면 개정, 그러나 여전히 남은 숙제[†]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법안을 중심으로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디지털경제연구원 / 정책2실

요약

- 「개인정보 보호법」은 2020년 ‘데이터 3법’이라는 명목하에 전면 개정된 이후, 3년 만인 2023년 3월 2차 전면 개정이 이루어짐
 - 2020년 데이터 3법이 개정되었지만,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개정이 추진됨
 - 2차 개정의 목적은 정보 주체의 권리를 강화하고, 글로벌 규제와의 정합성을 높이며, 디지털 환경에 맞는 법체계의 정비에 있음
- 그럼에도 디지털 환경에서 개인정보 처리를 어렵게 하는 불합리한 규제들은 여전히 남아 있어, 글로벌 시장에서 데이터 활용 기반의 혁신 서비스로 경쟁하는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
 -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그 요건을 완화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단서 조항을 포함하는 등 여전히 ‘사전규제’에 편중됨
 - 해외에서 국내와 같은 수준의 규정을 찾기 어렵고 이용자의 피로도 증대 우려가 있으며 제도의 실효성이 낮음에도 개인정보 수집 및 통지에 관한 관련 규정이 개선되지 않음
 - 현재의 업무환경이나 기술 발전 등 현황이 변화하였음에도 ‘망분리’를 강제함에 따라 비용 부담과 새로운 개인정보보호 기술의 도입에 어려움이 존재함
- 디지털기술이 고도화됨에 따라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에 대한 방향은 변화를 요구받게 되며, AI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에 힘입은 정보 활용 패러다임 변화에 적합한 방향을 지속적으로 모색하여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함

† 본 내용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디지털경제연구원의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제 실효성 제고방안 연구」와 2023년 6월 22일에 진행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 규제 개선 방향” 세미나의 내용을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또한, 2차 개정 이후의 시행령 및 고시 개정안에 대한 내용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시작하며

- 최근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이 공포(23.3.14)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제에 큰 변화가 발생함
- 그러나 디지털 환경에서 개인정보 처리를 어렵게 하는 불합리한 규제들은 여전히 남아 있어, 데이터 활용 기반의 혁신 서비스로 경쟁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기업의 경쟁력 약화가 우려됨
- 이에 본 논의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의 2차 개정이 갖는 의의와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2차 개정에도 불구하고 산업적 측면에서 개인정보 처리를 어렵게 하는 규제들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함

디지털 시대, 개인정보보호의 패러다임 전환

- 과거 개인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 고유의 정보로만 인식되었으나, 최근에는 다른 정보와 결합했을 때 개인을 식별할 수 있다면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봄(윤수영·여정성, 2018:18)
 - 현행법상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생존하는 개인에 대한 정보여야 하고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이며, 다른 정보와 결합했을 때 개인을 식별할 수 있다면 개인정보로 보고 있음(「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
 -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외에도 신용정보, 건강정보, 위치정보, 디지털 활동 정보까지 개인정보로 인식(최세정, 2020)
- 개인정보를 보는 시각은 개인의 사적 영역(Privacy)으로 강한 보호의 대상이었으나, 디지털 시대에서 개인정보는 이제 보호의 대상만이 아니라 사회·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원천으로 다뤄지고 있음
 -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산업의 특징은 개인정보의 다양한 기술이 결합하여 개인 삶의 전 분야에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임(성욱준·황성수, 2017:6)
 - 더욱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생성형 AI(혹은 초거대 AI)와 같이 고도화된 디지털 기술 기반의 서비스 구현을 위해서 개인정보 활용은 필수적임
 - 개인정보 활용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국내에서도 2020년 개인정보 보호법을 포함한 데이터3법을 개정해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여지를 확대함
- 개인정보보호는 개인의 정체성 확보와 공동체 운영을 위해 전제되어야 하는 가치이지만 보호 범위와 방법은 절대적인 기준에 의하지 않으며(김종철, 2004), 보호 방식을 현 상황에 맞게 유연화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개인의 상거래 기록이나 법률 행위 기록 등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기록이지만, 사생활 영역에 절대적으로 포함되는 정보인지는 상대적임(권현영 외, 2017)

「개인정보 보호법」 2차 전면 개정의 주요 내용

- 2020년 데이터 3법이 개정되었지만,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2차 개정* 추진
 - * 이하 개정안 내용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2023), 법무법인(유) 세종(2023), 법무법인(유) 광장(2023) 등의 자료를 참고하여 재구성함
- 국민 개개인이 자기 자신의 개인정보를 주도적으로 유통·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
 - 정보주체의 동의에 과도하게 의존했던 관행에서 벗어나 상호계약 등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 수집·이용이 가능하도록 ‘**동의 제를 완화**’ 함
 - 본인 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다른 개인정보처리자 또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에게 전송 요구할 수 있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신설
 -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 이루어진 결정이 정보주체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해당 결정에 대한 ‘**거부권 및 설명 요구권**’ 신설
- 나라 간의 경계 없이 디지털 서비스가 활용되는 상황에서, 글로벌 규제와의 정합성을 확보함
 - 그동안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때 개인의 동의 외에도 계약·인증·적정성결정 등으로 **국외 이전 요건을 다양화**하였으며, 국가가 개인정보를 적정하게 보호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외 이전 중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국제 기준과 달리 개인정보 보호책임을 기업보다 담당자 개인에 대한 형벌 위주로 규율하던 것을 **경제벌(과징금, 과태료) 중심으로 전환**
- 대량의 개인정보가 일상으로 처리되는 디지털 환경에 맞는 디지털 중심의 법체계 정비
 - 자율주행차, 드론, 배달 로봇 등,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기준을 마련**함
 -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이원화된 규제 체계(국내대리인 지정, 아동 개인정보보호, 이용내역통지, 손해배상 보장 등)를 개편하여 **동일 행위에 대해 동일 규제가 적용** 되도록 함

참고 | 「개인정보 보호법」 2차 전면 개정 경과



* 출처: 김은수(2023), “개인정보 보호법상 주요 규제 검토”,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규제 개선 세미나 자료집, 16p.

법률 개정에도 불구하고 해소되지 않은 규제

-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및 제공은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전 동의’에 편중
 - 이번 개정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와의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그 요건을 완화함
 - 하지만 적법 처리 요건 중,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의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해당 요건의 활용 불가¹⁾
 - EU의 GDPR는 적법 처리 요건에서 명백성이나 급박성 같은 제한적 표현이 없고, 해외 제도와 비교하더라도 우리나라는 구분 동의 방식 등과 같은 까다로운 동의 방식을 유지하고 있어 향후 개선이 필요함
- 제도 실효성에 대한 학계 및 산업계의 부정적 의견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한 통지 관련 조항들은 개선되지 않고 있음
 - 가장 대표적인 ‘개인정보 이용·제공내역통지제’의 경우, 법 개정(온오프라인 일원화)으로 수범자 범위가 확대됨
 - 해외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체계 내에서도 개인정보 이용·제공내역통지제와 유사한 조항은 찾기 어려운 상황

- 이용자 입장에서 과도한 메일 수신에 따른 피로도가 증가할 우려가 있음
 - 개인정보 이용·제공내역통지제의 실효성 분석 결과, 제도의 합목적성, 효율성, 사회·경제적 영향 모두 낮게 평가되었으며, 전문가 대부분이 해당 제도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 더불어,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출처 통지제 또한, 디지털 환경에서는 불필요한 제도²⁾임에도 개정법에서 존치함
 - 그러나, 정보주체가 이미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해 동의하였고,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공받은 자에게 별도의 통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음
- 기술중립성이나 기술의 발전을 고려하지 않은 채, ‘망분리’라는 특정 기술 방식을 강제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법 제29조 및 (개정 전 기준) 시행령 제48조의2,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등을 통해 망분리(물리적·논리적)의무 존재
 - 망분리는 클라우드에 구축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하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에 대한 외부 인터넷 차단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여 원격근무 및 재택근무 등 디지털 업무 환경에 부합하지 않음
 - 사업자들은 망분리를 위한 설비 구축 및 유지 비용, 불필요한 리소스 투입에 따른 각종 부담이 현존하고 있으며, 정보보호를 위한 다양한 기술 적용을 어렵게 함

맺음말

- 역동적인 디지털 기술의 변화는 매번 개인정보 보호법제에 관한 구체적인 논란을 유발하지만, 이러한 문제 상황은 아무리 입법 기술 차원의 개선작업을 수행하더라도 지속될 수밖에 없음
- 디지털 기술이 점차 고도화되면서 개인정보를 바라보는 규제기관의 시각도 점차 변화하고 있지만, 지속적인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법제는 산업의 성장과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많음
- 더욱이, 두 차례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의 권리와 산업 진흥의 균형점을 찾지 못했고, 시장과 기술의 이해가 전제될 때 충분히 개선이 가능한 부분들에 대한 심도 있는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음
- AI의 등장으로 더욱 빠르게 변화할 데이터의 위상을 고려할 때, 근본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제를 바라보는 관점을 보다 능동적인 차원으로 변화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 디지털 생태계와 산업의 동태를 구체적으로 살피고 이해할 필요가 있음

미주

- 1) 이번 개정법에서 동의 없는 처리는 가능해졌지만, 법 제15조 제1항은 여전히 정보주체의 동의가 기본이고 다른 요건은 '예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사전 동의 중심 구조는 유지됨. 또한 개정법 제15조(수집, 이용)과 달리 제17조(제공)은 계약체결 및 이행 요건이 적용되지 않아 결국 동의가 개인정보 처리의 기본이 되고 있음 해당
- 2) 제도는 오프라인 등에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에 관한 사항을 서면상 1mm 크기의 글자로 기재하여 동의를 받고 제휴사 등에 제공하여 발생한 피해로 인해 도입된 것으로 여겨짐

참고문헌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3.03.07).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데이터 신경제 시대 열린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https://www.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S074&mCode=C020010000&nttId=8674>
- 강신욱·안정호·윤호상·김민주 (2023.03.02.). 개인정보 보호법 제2차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법무법인(유) 세종.
<https://www.shinkim.com/kor/media/newsletter/2039>
- 권현영·윤상필·전승재 (2017). 4차 산업혁명시대 개인정보권의 법리적 재검토. 저스티스, 158(1), 7-42.
- 김종철 (2004) 전자정부와 개인정보보호의 조화-이념적 측면을 중심으로.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정책토론회 자료집. 17-18.
- 박광배·윤종수·고환경·채성희·손경민 (2023.03). 「개인정보 보호법」 제2차 전면 개정안 국회 통과(2). 법무법인(유) 광장.
<https://www.leeko.com/news/dpc/202303/k/20230307.pdf>
- 성욱준·황성수 (2017). 지능정보시대의 전망과 정책대응 방향 모색. 정보화정책, 24(2), 3-19.
- 윤수영·여정성 (2018).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제도에 대한 소비자 인식에 관한 연구. 소비자학연구, 29(3), 17-38.
- 최세정 (2020) 이용자 관점에서 바라본 동의제도의 현재와 발전방안. 이용자 관점에서 바라본 동의제도의 현재와 발전방안 세미나 자료집(2020.11.23.)
- 한국인터넷기업협회 (2022).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제 실효성 제고방안 연구.
- 한국인터넷기업협회 (2023).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 규제 개선 방향 세미나 자료집(2023.06.22.)